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관련, '22.11.30.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시설·장비·인력·실적 기준 관련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p>○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신고 주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www.herb.or.kr)을 통해 신고하여야 함</p> <p>- 먼저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일반 현황을 요양기관 현황신고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신고하며, 이후 [별지 제33호 서식]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 기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신고주기</th><th>신고 기간</th><th>실적 인정 기간</th><th>적용 기간</th></tr> </thead> <tbody> <tr> <td>상반기</td><td>2월 1일부터 14일까지</td><td>전전 연도 1월 1일 부터 전 연도 12월 31일 까지</td><td>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td></tr> <tr> <td>하반기</td><td>8월 1일부터 14일까지</td><td>전전 연도 7월 1일 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까지</td><td>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td></tr> </tbody> </table>	신고주기	신고 기간	실적 인정 기간	적용 기간	상반기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전 연도 1월 1일 부터 전 연도 12월 31일 까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하반기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전 연도 7월 1일 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까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신고주기	신고 기간	실적 인정 기간	적용 기간																							
상반기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전 연도 1월 1일 부터 전 연도 12월 31일 까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하반기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전 연도 7월 1일 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까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2	최근 2년간 수술 또는 시술 실적 기준의 구체적인 행위명은 무엇인가요?	<p>○ 실적 기준이란 요양기관이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충족하여야 하는 관련 수술 또는 시술 건수로, 구체적인 행위명은 [별지 제33호 서식]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신고서(구비 서류) 3. 최근 2년간 실적 표의 분류 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분류번호</th><th>코드</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최근 2년간 중격천자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건 이상</td><td>자653 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_승모판막</td><td>M6531</td></tr> <tr><td></td><td>M6544</td></tr> <tr><td></td><td>M6545</td></tr> <tr><td>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중 중격천자</td><td>M6549</td></tr> <tr><td></td><td>M6540</td></tr> <tr><td></td><td>M6556</td></tr> <tr> <td rowspan="4">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중 중격천자</td><td>M0653</td></tr> <tr><td></td><td>M0655</td></tr> <tr><td></td><td>M0652</td></tr> <tr><td></td><td>M0656</td></tr> </tbody> </table>	항목	분류번호	코드	최근 2년간 중격천자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건 이상	자653 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_승모판막	M6531		M6544		M6545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중 중격천자	M6549		M6540		M6556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중 중격천자	M0653		M0655		M0652		M0656
항목	분류번호	코드																								
최근 2년간 중격천자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건 이상	자653 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_승모판막	M6531																								
		M6544																								
		M6545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중 중격천자	M6549																								
		M6540																								
	M6556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중 중격천자	M0653																									
		M0655																								
		M0652																								
		M0656																								
3	기준에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	<p>○ 기준에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으로 승인</p>																								

연번	질의	답변												
	술 실시기관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승인 기간까지는 신고 없이도 동 시술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승인 기간 종료 이후에도 동 시술을 계속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함												
4	그간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을 실시하지 않았던 요양기관에서 향후 동 시술을 하려는 경우 정해진 신고 기간에만 신고 가능 한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관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을 하려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간에만 신고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신고주기</th> <th>신고 기간</th> <th>실제 인정 기간</th> <th>적용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상반기</td> <td>2월 1일부터 14일까지</td> <td>전전 연도 1월 1일부터 전 연도 12월 31일 까지</td> <td>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td> </tr> <tr> <td>하반기</td> <td>8월 1일부터 14일까지</td> <td>전전 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까지</td> <td>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td> </tr> </tbody> </table>	신고주기	신고 기간	실제 인정 기간	적용 기간	상반기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전 연도 1월 1일부터 전 연도 12월 31일 까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하반기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전 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까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신고주기	신고 기간	실제 인정 기간	적용 기간											
상반기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전 연도 1월 1일부터 전 연도 12월 31일 까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하반기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전 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까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5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으로 승인 받으면 언제부터 실시 및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은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수가 산정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수가 산정 가능 (신고일 아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실시기관 승인 여부 확인 방법】</div> <p style="margin-left: 20px;">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rb.or.kr) > 현황 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여부 'Y' > 적용시작일자 확인</p>												
6	그동안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사례에 대해 퇴원 시부터 시술 후 3년 까지 5차례 임상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사례에 대해서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더 이상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기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실시 조건 2. 라에 따른 임상자료 제출은 제출시점이 2022년 11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환자 추적 곤란 등의 사유로 임상자료 축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번	질의	답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7	급여기준의 실시기관 인력 조건에서 순환기내과세부 전문의 2인 (심초음파인증의 1인 포함) 이상에 대한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p>○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심초음파인증의 1인 포함) 이상은 순환기내과세부전문의 2인 중 1인은 심초음파인증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별지 제 33호 서식]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신고서(구비 서류) 2. 상근 인력 '순환기내과세부전문의' 표에 순환기내과세부전문의 2인을 기재하고, 2인 중 심초음파인증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체크함.</p> <p>- 표의 아래 심초음파 인증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재함 (성명,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인정기간)</p>